■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 6. 30.>

부대사업 개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부대사업	업종		사업의 형태 (직영, 임대·위탁 여부)	
	명칭			
	의료기관명			
	주소 (주사무소)			
신고인 (개설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의료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신고의 경우	1.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2.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1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른 부대사업 개설 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1.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개설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9조제3항).
2. 신고를 하지 않고 부대사업장을 개설하거나 개설 이후 변경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의료법」 제92조제1항).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작성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의료기관 개설 담당부서)						신고인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